

상품대금 또는 용역대가의 지급시기 및 방법

한국암웨이 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IBO는 서울과 부산, 광주, 대전, 대구, 울산, 전주, 강릉, 천안, 청주, 미창 및 제주와 IBO프리자에서 제품 대금을 지불하고 현장에서 직접 구매하거나 전화, 우편, 팩스, 인터넷(ABN사이트) 및 모바일 ABN을 통해 배달주문을 할 수 있습니다. 배달주문일 경우, 한국암웨이가 개설한 은행구좌에 제품대금을 입금해야 하며 은행 입금과 배달주문 확인 후 주문 시 신청된 주소지로 배달됩니다. 그외 배달 수수료 및 기타 자세한 제품 주문 방법은 IBO기격표 및 관련 키털로그를 참조하십시오.

상품의 인도시기 또는 용역의 제공시기

IBO프리자에서 직접 주문할 경우, 현장에서 즉시 주문하는 수령할 수 있으며, 배달주문의 경우, 주문대금의 지불 확인 후 주문을 확정하는 시점부터 통상 1일부터 5일 사이에 주문서 신청된 주소지로 배달됩니다. 참고로 배달 소요일자 계산에서 일요일과 공휴일은 제외된다는 것을 유의하십시오. 주문제품의 인도에 관한 기타 상세한 정보는 IBO기격표 및 관련 키털로그를 참조하십시오.

상품의 품질보증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한국암웨이 "소비자만족보증제도"와 기타 "품질보증서"에 따라 암웨이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의 보호와 품질보증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암웨이 "소비자만족보증제도"는 암웨이 제품을

사용한 소비자가 제품의 품질에 만족하지 못해 불만한 경우, 제품대금의 환불이나 다른 제품으로 교환해주는 소비자 보호제도입니다. 그러나 고의나 자신의 부주의로 손상된 제품에 대해서는 본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와함께 일부 제품에는 "소비자보호법" 제8조에 의거 품질표시에 관한 내용과 품질보증조건 및 부품보유기간을 표시한 품질보증서를 첨부하여 등 제품사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보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품질보증서가 없을 경우에 "소비자피해보상규정" (재정경제부 고시 제99-7호) 제5조에 의거, 관련 유사제품의 보상기준에 준해 보상해 드립니다.

*원 포 원 제품과 일부 제품의 경우 일반 단품규정에 상이하오니, IBO기격표 및 관련 카탈로그를 참조하십시오.

분쟁처리에 관한 사항

"소비자보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암웨이 제품을 구입 또는 사용한 소비자는 등 제품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한국소비자보호원(전화: 02-3460-3000)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타 암웨이 제품 및 사업과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한국암웨이 소비자 보호센터(전화: 080-200-0230)로 연락주십시오. 최선을 다해 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주소지 변경에 관한 사항

IBO가 주문한 제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배달하기를 원할 시에는, IBO와 소비자간의 제품판매를 위한 계약서(고객주문서, SA-107K1)를 반드시 제품주문시에 한국암웨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약의 철회와 그 행사 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

- IBO는 다음의 기간내에 한국암웨이에 상품의 구매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구매주문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 구매주문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상품의 인도가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 구매주문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한국암웨이의 주소가 기재되지 아니한 주문서를 교부받은 경우 또는 한국암웨이의 주소가 변경되는 등의 시유로 ① 및 ②의 기간내에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20일 이내
- 청약의 철회는 철회요청서를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IBO가 청약을 철회한 경우, IBO는 상품을 반환하여야 하며 한국암웨이는 상품 반환일로부터 3영업일까지 상품대금을 환불하며, 신용카드로 상품의 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신용카드 업자에게 상품대금의 청구를 정지할 것을 요청합니다.
- 한국암웨이는 상품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며 IBO에게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청약의 철회와는 별도로 IBO는 판매하지 못한 상품을 한국암웨이에 반환할 수 있습니다. IBO의 반품은 한국암웨이의 반품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해당 제품의 판매와 관련하여 해당 IBO에게 지급된 후원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재고반품은 인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만 허용되며, 별도의 반품수수료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반품금액의 환불시, 기자금 장려금 및 기인정 판례별로 재조정 됩니다.

제17조 (청약의 철회 등)

①다단계판매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 당사자 사이에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설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를 교부 받은 날부터 14일. 다만, 그 계약서를 교부 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

2.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다단계판매자등의 주소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받은 경우 또는 다단계판매자등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②소비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1.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멀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 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를 제외한다.

2. 소비자의 재화 등의 일부 사용 또는 소비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이 경우 다단계판매자등이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한 때에 한한다.

3.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한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기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③소비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 받은 날부터 3월이내, 그 사실을 알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④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철회등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청약철회등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등의 훼손에 대하여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재화 등의 공급사실 및 그 시기 또는 계약서의 교부사실 및 그 시기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자등이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⑥다단계판매자들은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한 재화 등의 경우 그 사실을 재화 등의 포장 기타 소비자에게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기하거나 사용(試用)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일부 사용이나 소비에 의하여 청약철회등의 권리의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⑦다단계판매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다단계판매원은 다단계판매업자에게 재고의 보유를 허워로 알리는 등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재고를 과다하게 보유한 경우, 재판매가 곤란한 정도로 재화 등을 훼손한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월이내에 서면으로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⑧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재화 등의 공급사실 및 그 시기, 재화 등의 훼손여부 및 책임소재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재화 등을 판매한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제18조 (청약철회등의 효과)

①다단계판매의 상대방(다단계판매자)은 다단계판매원 또는 소비자에게 판매한 때에는 다단계판매원 또는 소비자를, 다단계판매원이 소비자에게 판매한 때에는 소비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제17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한 경우에는 이미 공급받은 재화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다단계판매자(상대방)로부터 재화 등의 대금을 직접 받은 자 또는 상대방과 다단계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1항 내지 제8항에서 같다)는 재화 등을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단계판매업자(상대방)가 다단계판매원에게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함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아이의 비용을 공제할 수 있으며, 다단계판매자가 상대방에게 재화 등의 대금을 지연한 때에는 그 자연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대방이 신용카드등으로 재화 등의 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다단계판매자는 자체없이 당해 결제업자에게 재화 등의 대금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단계판매자가 결제업자로부터 해당 재화 등의 대금을 이미 지급 받은 때에는 자체없이 이를 결제업자에게 환급하고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급이 지연되어 상대방이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결제한 날 이후의 자연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단계판매자로부터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받은 결제업자는 자체없이 상대방에게 이를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다단계판매자와 정당한 시유없이 결제업자에게 당해 다단계판매자에 대한 다른 재무와 상계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결제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다단계판매자에 대한 다른 재무와 상계할 수 있다.

⑤결제업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상계를 정당한 사유없이 계올리한 경우 상대방은 결제업자에게 대해 대금의 결제를 거둘 수 있다. 이 경우 다단계판매자와 결제업자는 이를 이유로 당해 상대방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제7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불량자로 처리하는 등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⑥다단계판매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청약철회등에 따라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한 경우 그 환급한 금액이 자신이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차액을 다단계판매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⑦제1항의 경우 다단계판매자는 재화 등의 일부가 이미 사용 또는 소비된 경우에는 그 재화 등의 일부 사용 또는 소비에 의하여 상대방이 얻은 이익 또는 그 재화 등의 궁금에 소모된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금을 당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⑧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된다 제8조 제1항 또는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철회등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 등의 보험에 필요한 비용은 다단계판매자가 이를 부담하여 다단계판매자는 상대방에게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⑨다단계판매자, 상대방으로부터 재화 등의 대금을 지급 받은 자 또는 상대방과 다단계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 각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청약철회등에 따른 제1항 내지 제5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 등의 대금 환급과 관련한 의무의 이행에 있어서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단계판매원(IBO)의 금지행위

-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위력을 가하는 행위
-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또는 재화 등의 기격, 품질등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알리거나 실제의 것보다도 현저히 무리하거나 유리한 것으로 오인 시킬 수 있는 행위
-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기업이자 판매보조물, 개인활동판매액, 교육비 등 그 명칭 및 형태 여하를 불문하고 10만원이하의 범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 이상의 비용 기여금을 징수하는 등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
- 다단계판매원에게 하위 판매원 모집 자체에 대하여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후원수당의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
- 청약철회등이니 계약의 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 전화번호 등을 변경하는 행위
- 분쟁이나 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의 부족을 상당기간 방지하여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 상대방의 청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화 등을 공급하고 재화 등의 대금을 청구하는 등 상대방에게 재화 등을 강제하거나 하위 판매원에게 재화 등을 판매하는 행위
-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모사전송, 컴퓨터통신 등을 통하여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강요하는 행위
- 다단계판매원이 회사적인 신분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하위판매원으로서의 등록을 강요하거나 다단계판매원이 그 하위 판매원에게 재화 등의 구매를 강요하는 행위
-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교육, 학습 등을 강요하는 행위
- 다단계판매업자의 피용자가 아닌 다단계판매원을 다단계판매업자에게 고용된 자로 오인하게 하거나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를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게 하는 행위
-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행위
- 다단계판매자가 거래의 상대방에게 판매하는 개별 재화 등의 가격을 130만원 이상으로 정하여 판매하는 행위
-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거나 허락 받은 범위를 넘어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재화 등의 배송 등 소비자와의 계약의 이행에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재화 등의 거래에 따른 대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도용방지법을 위하여 분인확인에 필요한 경우
 - 법률의 규정 또는 법률에 의하여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 다단계판매 조직 및 다단계판매원의 지위를 양도·양수하는 행위. 다만, 다단계판매원의 지위를 상속하는 경우 또는 사업의 양도·양수·합병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다단계판매 조직으로 기관을 지정하는 경우로서 다단계판매원에게 기관을 지정하는 행위
-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원 및 교원으로서 다단계판매원으로 기임하는 행위
- 다단계판매 조직 및 다단계판매원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양수하는 행위

철회 요 청 서

상품구매일자:	년 월 일	구매장소:
구매품목:	금액:	
IBO번호:	IBO성명:	(인)

철회요청사유:		
구매품목:	금액:	
전화번호:	철회요청일	년 월 일